동물권행동 카라 보도자료

2024년 6월 24일(월) 8: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매, 사진 있음)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변화팀

담당 : 윤성모 활동가 (070-4760-7283) 신주운 팀장 (070-4760-0711)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동물 11마리 죽이고 구속됐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나..

재판부,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 없어
동물단체, "역대 최악의 솜방망이 처분"

입양,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온 11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어 법정에 선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상엽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경찰에서도 증거를 제시하여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되나, 반성하는 태도가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보호관찰과 4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20대 남성 안 모 씨는 지난 4월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데려온 강아지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다. 검사는 동물보호법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는, 구속되어 법정 최고형을 구형 받았던 안 씨를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은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선고라며 강력 규탄하였다.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동물학대 사건은 피해 당한 동물이 고소를 할 수 없어 제3자에 의한 형사고발이 주를 이룬다. 항소 역시 검사의 결정을 요청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항소요구서를 검사 측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신속한 항소 결정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형사 재판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1심 법원으로 항소장이 제출되어야 한다.

동물권행동 카라

사진자료

안 씨가 안고 있던 '진티즈'의 마지막 모습.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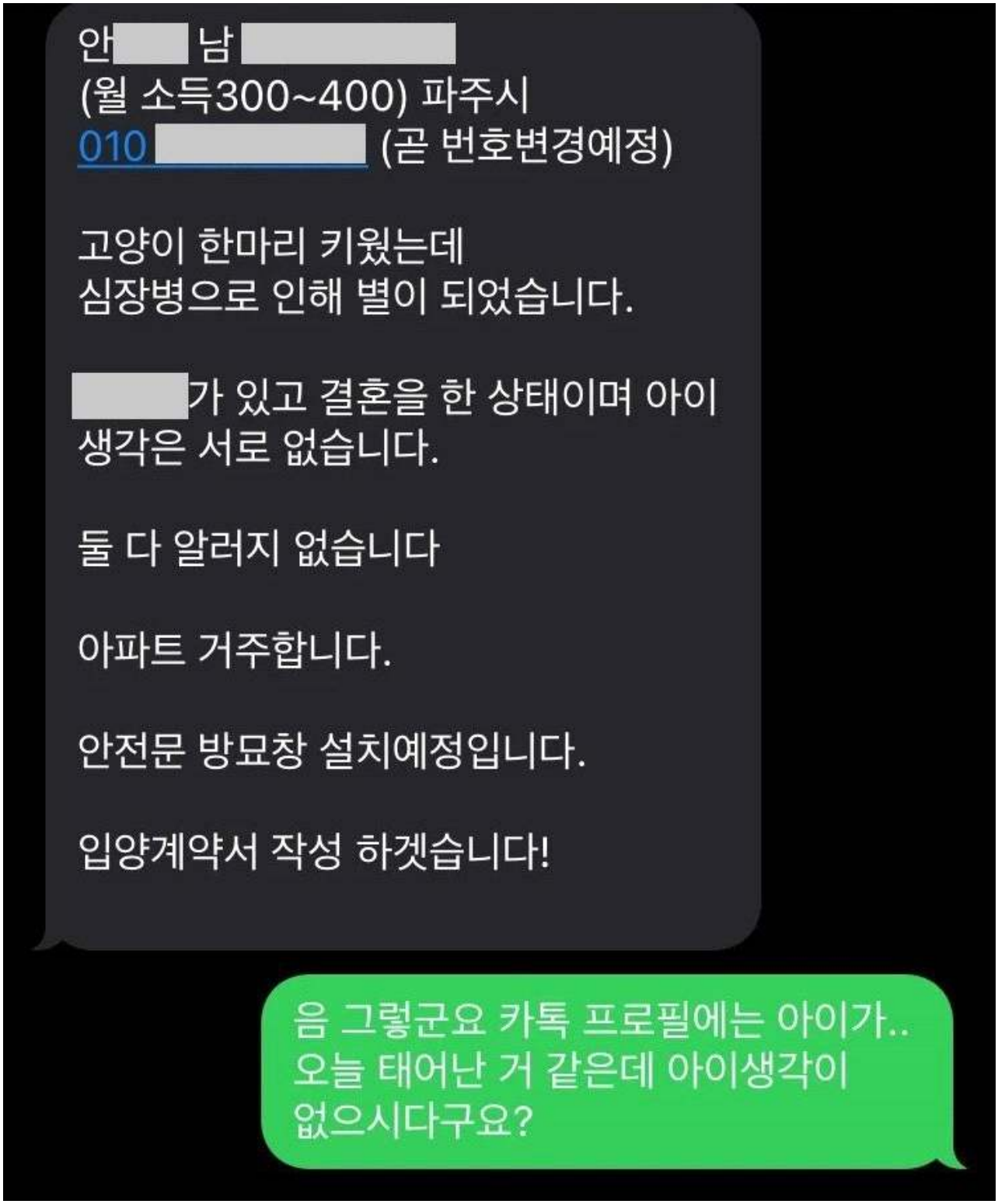

안 씨가 입양을 시도하며 거짓말 하던 모습.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